

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

□ 제정이유

-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13조의4제1항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범위내에서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500명 이상으로 정함 (안 제2조)

□ 검토의견

가. 지방자치법상의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.

개정지방자치법에 신설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이 있음.

지방자치법상의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시군의 경우는 도가, 도의 경우는 행정자치부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. 이는 감사부서의 독

립성을 위한 면도 있지만 자치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중앙집권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됨.

개정지방자치법의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신설되기 전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당해 조례나 규칙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유사한 시민(주민)감사청구제도를 규정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(파주시 경우도 시 지침으로 주민감사청구를 규정하고 있음)

나. 법령적합성

-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인 주민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됨.

지방자치법

제13조의4 (주민의 감사청구) 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시·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다. 내용타당성

- 동 제정 조례안의 내용은 일정수 이상의 파주시민이 연서하여 파주시의 특정사무처리에 대하여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

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에 관한 것임.

- 주민 감사청구제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감사청구 연서시 필요한 주민의 수임.

지방자치법에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청구인 숫자를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 동 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인 숫자를 500명으로 정하고 있음. (99년말 현재 파주시의 20세이상 인구숫자는 13만2229명이고 이의 50분의 1은 2644명임.)

- 동 제정조례안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인 숫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상한선보다는 적은 편이나,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숫자임.

참여연대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주민감사청구인의 숫자를 10명으로 할 것을 주장하나 이 경우 감사 폭증등의 역효과가 우려됨.

따라서, 주민감사청구인 숫자에 대하여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.(수원시의 경우 감사청구인의 숫자를 1,000명으로 조례안이 부의 되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700명으로 수정되어짐)